

의안번호	제 78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392회)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6월 30일

#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오영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5
----------	-----

발의연월일 : 2021년 6월 30일

발 의 자 : 오영탁, 임영은, 이옥규,  
박상돈, 심기보, 육미선,  
박우양

## 1. 제정이유

-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 등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라. 입법예고 : 2021. 6. 16. ~ 2021. 6. 26.

##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도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큰 법인·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취

###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 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한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3. 관련조문

- 안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제1호

#### 5.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지원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